

# 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'99-55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일자 : 1999. 10.23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□ 폐지이유

- 상위법(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)의 개정 후 적시입법이 지연되어 적법성 논란 및 불합리한 자치 법규등으로 인해 행정신뢰도가 저하되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일제 정비하려는 것임

## □ 주요골자

-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,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, 산업단지관리지침,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『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』를 폐지

## □ 폐지근거

- 관련법규
  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  -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  - 산업단지 관리 지침
  -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 지침
- 경상남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등 폐지 조례안

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